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73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박희승 · 백선희 · 윤준병
박용갑 · 어기구 · 김병주
서영교 · 서영석 · 이학영
김종민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의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학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의학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학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학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한방임상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u>설치</u>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 ----- ----- ----- ----- <u>설치 · 운영</u> -----.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 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 · 개 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 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 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u> ③ ----- ----- ----- ----- ----- ----- ④ <u>한방임상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정 기준 ·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 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